

심사보고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0
----------	-----

2024. 10. 18.(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 추진근거

- 「스포츠클럽법」 제3조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4.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 필요성

- 미래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필요(진로 교육 다양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미래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
-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강화

○ 민간위탁 사업 내용

- 위탁내용: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
- 위탁기간: 2025. 1. 1.~2026. 12. 31.(2년)
- 위탁비용: 300,000 천 원 예정(60,000 천원×5개 클럽)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경기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내용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 필요성

-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 학교 지원 발굴과 통합관리를 통하여 학교-마을-지역사회가 상호 연대·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괴산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을 통한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 민간위탁 사업 내용

- 위탁내용: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
- 위탁기간: 2025. 1. 1.~2025. 12. 31.(1년)
- 위탁비용: 100,000 천 원 예정(100,000천 원×1개 단체)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은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과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됨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경기 종목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5개에 신규로 민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는 2020.10.14.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차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2개의 민간 위탁 사무는 신규로 위탁하거나 동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제출 시기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나. 민간위탁 시무의 적정성 검토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⁴⁴⁾에 따르면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⁴⁵⁾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⁴⁶⁾,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44)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45)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6)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⁴⁷⁾에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⁴⁸⁾에 따르면 학교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렵고 훈련 장소가 한정적인 5개 종목을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의 공공 운영 시스템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학교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47)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9.]

48)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엘리트 체육 육성 패러다임 전환 및 선진 체육 인재 육성 시스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⁴⁹⁾에 따라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교육감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단순 행정 사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⁵⁰⁾에 따르면,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49)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지난 2020.10.14.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3차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에 4번째 재계약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과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이전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고, 교육감 소관 사무 및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므로 절차, 시기 및 위탁 사무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 적정성 검토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 성과 등이 포함된 일관성 있는 재계약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5. 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체육건강안전과 체육교육팀



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

- 충북 지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래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위탁형 학교 밖 스포츠클럽 모델
-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 마련

I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2024.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 배경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미래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
-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강화 필요
-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필요
 -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저변확대를 통해 우수선수 발굴 · 육성
 - 다양한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의 다양화

II

추진 목적

-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의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학교 전문(엘리트)체육 육성 패러다임 전환 및 선진형 체육인재 육성 시스템 운영 활성화

III

추진 방침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 학교의 육성이 어려운 종목과 훈련장소가 한정되어있는 종목에 대해 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
- 교육 활동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클럽 운영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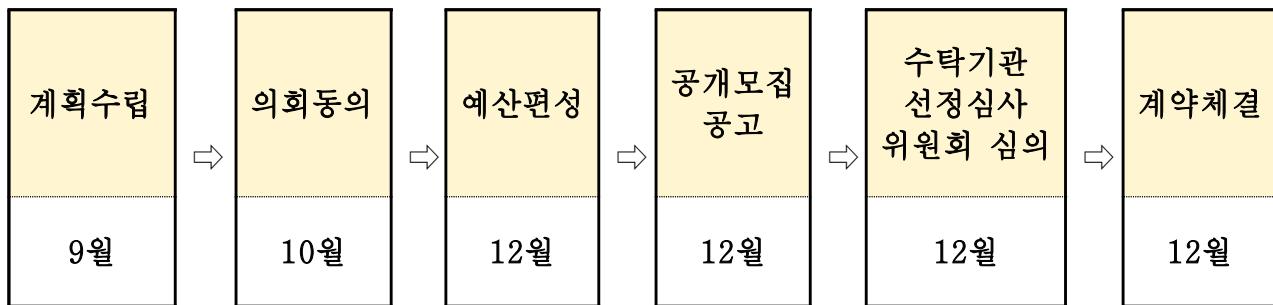
현황 및 시사점

- 일반 현황
 -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적인 공공스포츠클럽 협력체계 미흡
- 시사점
 -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필요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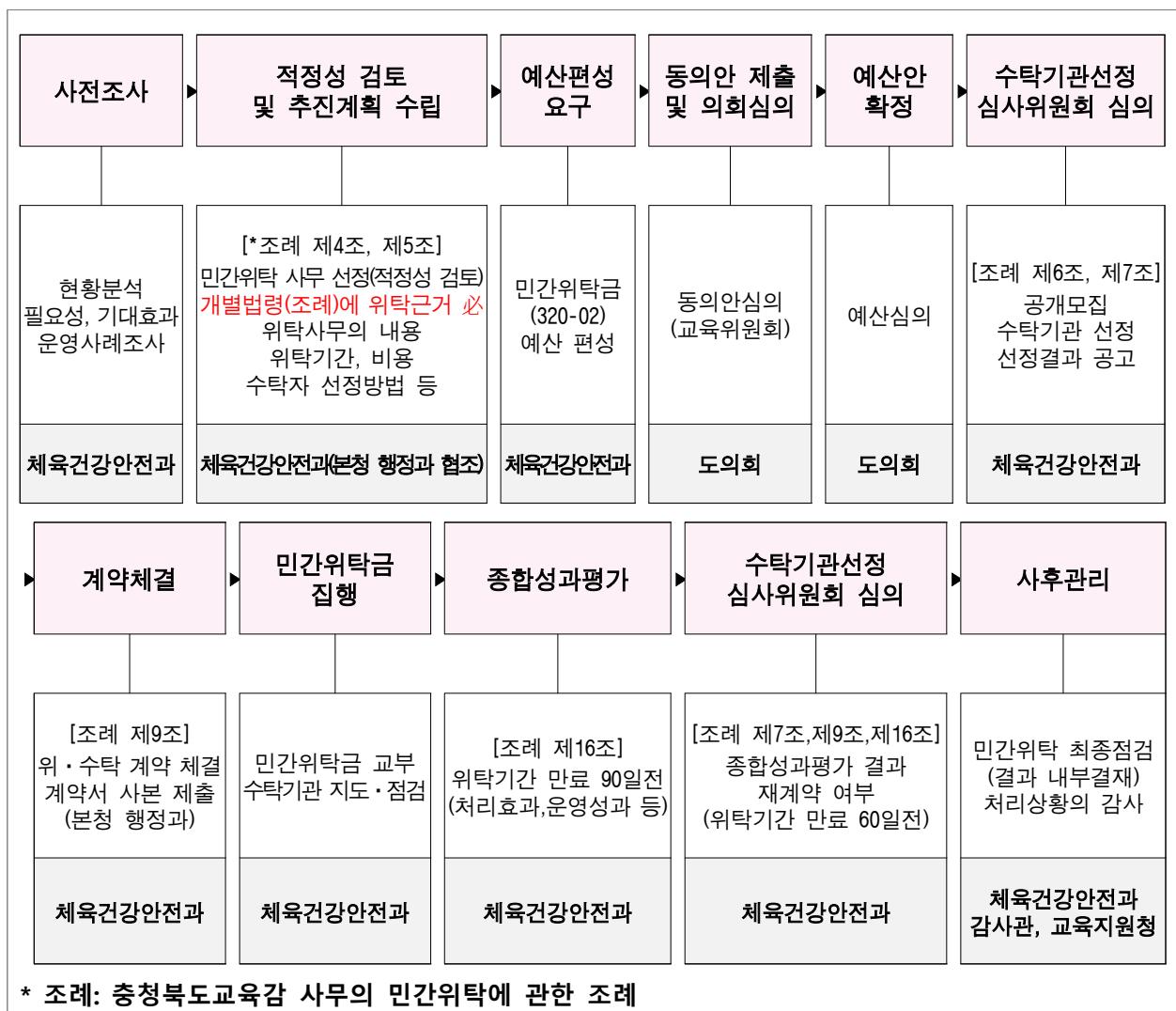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 절차>



2. 사업 개요

- 사업명: 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 민간위탁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2년)
※ 운영기간 중 성과평가 또는 중간 점검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추가 재계약 시행(총 4년)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 사업규모: 5종목 5개반
※ 지원 신청에 따라 선정될 종목 및 클럽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300,000천원

3. 지원 내용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사용 범위	사용 내용
인건비	·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건비
운영비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특식비, 세탁비 등
	· 훈련경비 · 장비비, 식비, 간식비, 특식비, 차량임차료, 유니폼비 등
	· 운영경비 · 여비, 공공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학생선수 보험료,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비상약품비 등
	· 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

-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매 등 사용 불가
- 사업비(운영비)는 위 지원 대상만 사용
- 수익사업 외 이윤 편성 금지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운영비의 6%, 이윤은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

비의 10% 초과 금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4. 지원 금액

- 연간 총 사업비: 300,000천원
- 연간 사업비 지원: 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 1개반 년 60,000천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 및 클럽 학생선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5. 민간위탁기관 공모

- 공모 규모: 5개 클럽(지원 신청에 따라 클럽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기준(자격 요건)
 -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경기단체 및 비영리법인
- ※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 공모 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접수 기간: 2024. 12월 중
- 접수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복지관 2층)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심사를 위해 제출 서류는 파일로 별도 지정 이메일에 제출
- 제출 서류
 - ① 민간위탁사무 수탁 신청서(별도 안내)
 - ② 운영계획서
 - ③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 ④ 비영리 법인 정관 사본
 - ⑤ 2024년 선수등록부 사본(전체 학생선수 인원 포함)
 - ⑥ 경기실적증명서 원본(학교운동부지도자)
 - ⑦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학교운동부지도자)

⑧ 통장 사본 [비영리 법인(단체) 명의] 등

6.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 방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선정
※ 필요시 사업계획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원: 총 8명
※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구성,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됨
 -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명
 - 충청북도체육회 소속 1명
 - 학교운동부 운영교 관리자 2명
 - 스포츠클럽 관련 해당 분야 대학교수 1명
 - 법무법인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 해당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 임기: 위원 위촉일 ~ 심사가 종료된 날
 - 위원장: 기획국장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기능
 - 수탁기관 선정 심사(지원 대상 결정)
 -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기준 및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심사 결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높은 점수 우선 순위 선정)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선정 결과 발표: 개별 안내
- 심사 기준

연번	평가 항목	심사 내용	배점	비고
1	사업 내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적합성 • 운영 프로그램 적정성 및 다양성 •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 	30	
2	사업 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수준·역량 	30	
3	사업 여건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시설현황 • 학교시설 공유 여부 	20	
4	예산편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예산 편성 	20	
합계			100	

7. 수탁기관 사업 시행

- 위탁협약 체결: 수탁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선정 기관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총 2회)
 - 사업비 중간 점검: 2025. 6월, 2026. 6월
 - 점검사항: 사업 방향,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예산집행 적정성 등
 - 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 취소 및 정지 가능 ⇒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수탁기관 사업 운영 유의사항
 - 사무편람* 작성하여 교육청 승인 후 비치
- *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 명시

- 모든 지출은 사업비 수령 통장과 연계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인건비, 수당 등은 계좌 이체 가능
- 실내·외 활동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 학생 안전 관련 보험 의무 가입**, 시설(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등 학생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 학생 안전 확보
 - *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월 1회 이상),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전·중·후 학생 안전교육
 - ** 학생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 및 결과 제출
- 수탁기관은 기관 명의로 종사자 및 지도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및 결과 회신이 가능해야 함
- 아래 사항에 발생 시 민간위탁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학생선수에게 폭력 및 인권침해를 행사한 경우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선수 정원에 미달할 경우 등

8.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 정산 시기: 매년 사업 종료 전 1개월 내 정산 보고
- 정산 서류: 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성과평가 및 처리 상황 감사: 매년 별도 종합성과평가(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적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평가

9. 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전체
- 평가시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 평가실시: 민간위탁사무 처리 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
- 평가결과: 재계약 심사 시 반영

VI

세부 추진 일정

구 분	담당부서	내 용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기초조사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민간위탁 내용 결정 - 개별 위탁조례 제·개정 추진(필요시) - 위탁기간의 결정, 위탁비용 산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성과평가 및 교육 계획 수립 <p>※ 최초 계획수립 시 행정과와 협의</p>
의회동의	체육건강 안전과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사전 동의 요청 - 일반안건 제출 절차에 따른 의회 안건 제출
예산편성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영
위탁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공개모집(원칙-홈페이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
위·수탁 계약 체결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계약서 사본 제출(행정과 제출) - 계약 이행 보증
위탁사무 인계·인수	체육건강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 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사무편람 승인·비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체육건강 안전과 행정과 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기관의 의무 - 예산의 지원 및 정산 -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 성과평가(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 민간위탁 종료 시 행정과에 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만족도 증대
- 전문적인 민간단체의 우수한 지도자, 현대적 장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 증가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전문(엘리트)체육 육성 시스템의 선도적 전환으로 학생선수 육성 패러다임 변화 선도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충청북도괴산종평교육지원청

I

추진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제16조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II

추진 배경 및 방향

괴산온마을배움터 추진

- (사업 기간) 2017. ~ 현재까지

- (사업비(예산))

※ 단위(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도교육청 (민간위탁*)	200,000	200,000	300,000	350,000	350,000 (90,000)	350,000 (100,000)	350,000 (100,000)	350,000 (100,000)
괴산군 (괴산군민장학회**)	200,000	200,000	300,000	350,000	350,000 (76,000)	350,000 (45,000)	350,000 (61,500)	350,000 (61,500)

* (계약상대자) 행복교육괴산어울림(2021, 2022, 2023, 2024)

** (지방재정교부금계약대상자) 행복교육괴산어울림(2021, 2022, 2023, 2024)

○ 괴산온마을배움터 추진 경과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2020. 9. 8.)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2020. 10. 14.)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운영(2021. 3. 19. ~ 12. 31.)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운영(2022. 1. 1. ~ 12. 31.)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운영(2023. 1. 1. ~ 12. 31.)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운영(2024. 1. 1. ~ 12. 31.)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전

부개정, 2024. 8. 9.)

<p>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p> <p>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p>

□ 타 시도 운영 사례 분석

○ 타 시도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직영	민간단체 위탁	재단법인 산하형 (공공 위탁형)
운영 사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행복의성지원센터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화성이음센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자체 또는 교육청 직접 운영공공성 확보 및 행정적 통제 용이예산 확보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간단체에 사업 위탁 운영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린 사업 추진 가능다양한 민간 지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단법인 산하 별도법인 설립 운영공공성과 민간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적 절차에 따른 안전성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빠른 의사 결정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가능공공 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력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경험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유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로 다양한 소통과 협치의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조직 운영의 안전성재단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가능전문인력 확보 용이중립적 입장에서 사업 추진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 및 연속성 부족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민간 부문,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의 어려움주민 참여 및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탁 단체·법인의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의 불안정 우려민간 단체의 목적과 사업 목표의 불일치 가능성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 목표의 불일치 가능성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할 수 있음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민간 소통이 다소 부족업무방식에 있어 다양성, 창의성, 역동성 부족

※ (충북 현황) 민간위탁 1지역(괴산), 직영 10지역(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단양)

○ 타 시도 운영 사례

- 직영 및 재단법인 산하형(공공위탁형)

구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화성이음센터
개소일	2015. 12.	2016. 8.
설립 근거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12. 8.)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4. 8. 7.)
설립 목적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와 학력 혁신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으로 쉼터, 나눔터, 배움터 운영
운영 방식	직영 (시흥시 교육자치과)	공공위탁 (화성시 인재 육성 재단 산하)
역할	시흥시-교육청 협력을 통한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 마을교육자원 DB구축 및 학교 연계 공동 교육과정 제안사업, 마을교육자원 역량강화 워크숍, 학부모 지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	학교 안과 밖의 배움을 연결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확대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도모 및 교육격차 해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직원 대표로 구성된 “지역 혁신 교육협의체” 운영 - 인력 및 재원은 교육청과 시흥시 공동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음터는 화성시 학교 복합화 시설로 마을 교육공동체사업, 특화사업, 도서관사업 운영 - 재원은 시의 출연금 등

- 민간단체 위탁

구분	행복의성지원센터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개소일	2022. 9.	2018. 10.	2024. 7.
설립 근거	「의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2022. 4. 21.)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2015. 3. 25.)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23. 4. 10.)
설립 목적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민관협치의 중간 지원 기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지자체-교육지원청을 연결하고,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 수행
운영 방식	민간위탁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전라남도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민간위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
역할	의성군-의성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상생과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	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상생과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	마을과 학교의 교육을 잇는 중간 지원조직, 교육네트워크 구성 지원, 마을 중심 평생교육 재정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특화사업 운영 - 재원은 의성군 의성교육지원청 공동 분담 및 협력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협력체계 강화, 지역특화 교육 확대, 도시 전역 배움터 조성 사업 운영 - 순천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자치 지원으로 더 넓은 배움터 제공 사업 지원 - 교육청 재정 지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괴산온마을배움터의 특징

지역 특성	괴산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은 지역
현황	2024년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2021년에서 현재까지 '행복교육괴산어울림'에 위탁하여 운영
필요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중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구분	민간위탁	직영
공공성 및 안전성	- (장점) 다양한 민간 자원 활용 가능,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가능 - (단점) 위탁 단체의 목적과 사업 목표의 불일치 가능성, 수익성 추구 경향 -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장점)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력 용이 - (단점)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 및 연속성 부족 - 인력 및 예산 관리의 안전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장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경험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유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단점) 사업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 (장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빠른 의사 결정 - (단점)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 민간 위탁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민간 단체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 특성 반영)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법인(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민간단체에 비해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유연한 운영) 민간 법인(단체)의 유연한 운영 방식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대응 -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비용 발생

민간위탁 추진 방향

- 지역의 교육 현황, 문화적 배경, 주민들의 요구, 지역사회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적격기관 선정
-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지역 체험처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을 선정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효과성 확보
-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 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의 지속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지속적 개선

III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로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업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민간기관(단체)의 특성상 행정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연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능
- 지역 주민의 의견 적극 수렴, 주민 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교육청은 정책 수립·평가에 집중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 가속화 및 전문인력 활용과 유연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 법인·단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 공공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IV

민간위탁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 개요

- (사업명)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추진사유)

-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학교 자원 발굴과 통합관리를 통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괴산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을 통한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 (추진 방법)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폭넓게 연대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사람	중간 지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온마을배움터 활동가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 양성,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 괴산온마을배움터 마을교육과정 지원 - 마을배움터 및 체험처 발굴
협력	교육청, 괴산군, 학교 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소담회 등) 활성화 ○ 괴산온마을배움터 워크숍 운영 ○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력 ○ 유관기관 협업 및 역량강화 포럼
연대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온마을배움터 거버넌스 구성 운영 ○ 괴산온마을배움터 로드맵 구축 ○ 읍면 단위 마을교육협의회 운영지원 ○ 자료 제작 및 성과 보고회 운영
지속가능	어린이·청소년 학부모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자치배움터, 배움여행, 배움길) 운영 및 지원 ○ 마을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시스템 구축 ○ 학교, 마을의 공간 공공화

- (위탁 내용)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 (위탁 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31.(1년)
 -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 (위탁 비용) 1억원(예정)
 - ※ 위탁 사무량, 예산의 변동에 따라 매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 인원) 약 3명
 - ※ 센터장, 팀장, 직원 등이며, 인력 규모는 연간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 운영 신청자를 모집하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등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 (내·외부 위원 9명)
- (수탁 자격)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안)

- (위탁비) 100,000천원 예정
- (산출 내역)

항목(비율)	소계(원)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액(원)
인건비 (53.28%)	53,279,210	기본 급 및 수당	기본급*	91,490원×2명×21일×12월=	46,110,960
			정액급식비	140,000원×2명×12월=	3,360,000
			퇴직급여충당금	1,904,125원×2명=	3,808,250
운영비 (15.08%)	15,082,720	공적 보험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200,280원×2명×12월=	4,806,720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40,000원×12월=	480,000
			전화	10,000원×12월=	120,000
			인터넷	50,000원×12월=	600,000
			전기	100,000원×12월=	1,000,000
			상하수도	8,000원×12월=	96,000
			정수기	15,000원×12월=	180,000
			임차료	70,000원×12월=	840,000
			시설임대	500,000원×12월=	6,000,000
		여비	관내 출장비	20,000원×2명×2회×12월=	960,000
교육생태계 조성 (10.31%)	10,310,000	소담회 운영			1,200,000
		실무 협의회 운영			800,000
		괴산	강사비	120,000원×8명×1회=	960,000
		온마을	급량비	8,000원×50명×3식=	1,200,000
		배움터	간식비	3,000원×50명×1회=	150,000
		워크숍	장소대여비	1,000,000원×1회=	1,000,000
공교육혁신 지원 (9.2%)	9,200,000	민관학 역량강화 포럼			5,000,000
		괴산특화 마을교육과정 개발			200,000원×6권역=
		괴산온마을배움터자원지도 제작			1,200,000원×2읍면=
		괴산온마을배움터 체험처 발굴			200,000원×3체험처=
		청소년 활동 지원	자치배움터 운영	1,500,000원×1회=	1,500,000
			배움여행 운영	2,000,000원×1회=	2,000,000
교육공동체 강화 (12.13%)	12,128,070	배움길 운영			1,500,000원×1회=
		괴산온마을배움터 소식지 발행			1,500,000원×2회=
		마을배움터 지원	마을배움터 육성	500,000원×4곳=	2,000,000
			간담회	150,000원×4회=	600,000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마을교육 강사양성	1,000,000원×1회=	1,000,000
			마을교육 역량강화 교육	1,000,000원×1회=	1,000,000
			활동가 용품비	100,000원×4회=	400,000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2,000,000원×1회=	2,000,000
		성과 공유회	성과공유회 운영	1,000,000원×1회=	1,000,000
			자료 제작 및 홍보	1,128,070원×1회=	1,128,070
합계		100,000,000			

* (기본급) 일용직인건비 기준액으로 일당 91,490원(2024년 생활임금액), 월 21일 근무로 산정: 91,490원×21일×12월 = 23,055,480원(1인 1년 기준)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국민연금료 86,440원+건강보험료 76,910원+고용보험료 17,290원+산재보험료 19,640원 = 200,280원(1인 1개월 기준)

※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은 수탁기관의 운영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 예산) 충북교육청과 괴산군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충북교육청 1억원, 괴산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② 민간위탁 업무범위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괴산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괴산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괴산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괴산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괴산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 그 밖에 괴산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등을 통해 연장
(위탁 기간 동안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탁 조건)

- 사업의 범위는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여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
-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금지
-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 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④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 대상) 공개모집
- (개최 시기) 2025. 1월
 -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 인원) 9명 이내,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 (심사 항목)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
- (계획 설명)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수탁자 선정)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⑤ 협약 체결 및 공증

- (체결 시기) 2025. 1월
- (내용)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⑥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내용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 (구성) 센터장(겸임가능) 1명, 전담인력(팀장, 직원) 2명 배치
 - (기능)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학교-지역사회 연계, 마을학교 사업 점검 및 컨설팅, 괴산온마을배움터 로드맵 설계, 마을교육자원 발굴 및 마을강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교육 지원체계 구축
 - (소요예산) 인건비 + 운영비
- 마을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소담회’ 운영
 - (구성) 학부모, 교사, 지역활동가, 마을학교활동가,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유관 기관, 대학 등 20명内外
 - (운영) 월 1회 정기적 소담회 개최
 - (내용) 지역의 교육비전, 교육정책연계 등 자유로운 소통과 교육 의제 제안
 - (소요예산) 1,200,000원
- 괴산온마을배움터 실무추진단 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 (구성)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군청, 주민단체, 지원센터

- (운영)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 (내용) ①유관부서, 중간지원조직, 단체를 포함한 교육협력 논의, ②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 마을자치회, 지역연계 돌봄 교실, 청소년주도 마을학교, 권역별 마을학교, 학교-마을연합 방과후학교 등 협력사업 실천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 협의
- (소요예산) 800,000원

○ 느티울마을이해교육을 위한 ‘괴산온마을배움터 워크숍’ 운영

- (대상)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소담회위원, 센터 활동가,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등
- (운영)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내용) 6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읍내)으로 나뉜 괴산온 마을배움터의 특색 있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발굴 및 논의
- (소요예산) 3,310,000원

○ 민·관·학이 함께 공감·동행하는 ‘역량강화 포럼’ 운영

- (대상) 마을교육활동가, 마을교사, 현장교사, 지자체, 교육청, 중간지원 조직 활동가, 지역 주민 등
- (내용) 정주의식 확산을 위한 괴산의 교육의제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의 비전 수립, 마을교육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공유하며, 다양한 강좌와 토론 등 개최
- (소요예산) 5,000,000원

○ 자연괴산, 마을을 품은 ‘괴산특화 마을교육과정’ 개발

- (목적) 농산촌 지역인 괴산군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괴산, 괴산특화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괴산온마을배움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 함양
- (구성) 현장교사, 마을활동가, 학생, 학부모, 센터 활동가 등
- (내용)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괴산특화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나고 자란 지역을 배움터로, 지속가능한 교과서로 나와 지역, 세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학교-마을 연계 수업 운영지원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
- (소요예산) 1,200,000원

○ 마을이 우리에게 溫다네, ‘괴산온마을배움터 자원지도’ 제작

- (목적) 지역특색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괴산온마을 배움터 자원지도 제작
- (운영) 괴산 관내 초·중·고에 배부하여 학생 및 교사 지원
- (제작)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함께 제작
- (내용)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작하며 마을학교 소개, 권역별 보물찾기 여행, 역사여행, 숲길여행 소개, 랜선여행, 마을연구 동아리 지역화 자료 등 수록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자원지도를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년도	2021	2022	2023	2024
기개발 읍면 지역	괴산읍, 소수면	불정면, 문광면	연풍면, 청안면	장연면, 칠성면

- (소요예산) 2,400,000원

○ 삶과 연계하는 ‘괴산온마을배움터 체험처’ 발굴

- (목적) 괴산의 학생·주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 및 체험처 발굴
- (운영)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센터 활동가
- (내용) 삶과 연계하는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청년 연계 활동 운영, 학생-주민 연계활동 ‘마을어른친구’ 사업 지원, 신규 체험처 발굴
- (소요예산) 600,000원

○ 청소년주도 마을 학교 ‘청소년 활동’ 지원

-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확장
- (방법)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배움터 운영, 청소년 문화기획단 ‘고래’ 운영 및 기획을 통한 배움여행 운영, 청소년 인문학 강의, 청소년 카페 운영위원회, 청소년축제 등을 함께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구분	청소년 활동 지원 내용
워크숍	청소년 자치 워크숍
배움여행	청소년 자치 공간 탐방
배움길	청소년 인문학 강의 연 4회
자치활동 기획	청소년 카페 운영 기획단
	청소년축제 기획단
	재미난 프로젝트(청년+청소년 프로젝트) 기획단

- (소요예산) 5,000,000원

○ 활동하고 기록하는 ‘괴산온마을배움터 소식지’ 발행

- (목적)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활동과 괴산온마을배움터, 마을학교 등과 연결된 다양한 교육정책 연계 활동 홍보
- (발행)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내용)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활동 및 괴산 내 권역별 마을학교, 마을 체험처, 마을교육자치회 소식, 청소년카페마을연계돌봄, 마을연계방과후교실, 학교-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청소년정책마켓, 마을교육네트워크의 활동 기록
- (소요예산) 3,000,000원

○ 알며 사랑하며 배우는 마을배움터 지원

- (목적) 괴산온마을배움터와 학교를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으로 마을 교육협의회 활동 지원
- (내용)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마을배움터 자원 봉사, 마을교육활동가 봉사 및 마을교육과정 개발 지원
- (소요예산) 2,600,000원

○ 지역에서 살며 활동하는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 (목적) 마을교육의 기본 이해, 실무교육을 통한 마을교육 강사 양성 및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 (운영) 2~3월 중 운영
- (내용) ①(교육과정)필수교육과정, 기본교육,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②(이수)교육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했을 시 수료증 발급, ③(대상)신규마을 교육 강사 및 2024년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미이수자 펼쳐 수강
- (소요예산) 4,400,000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마을교육활동 평가와 성과공유회 운영

- (기간) 모니터링 연중 운영, 성과공유회 11월 운영
- (대상) 학교-마을협력 수업, 마을학교 수업, 청소년카페 연계 마을돌봄, 마을연계방과후활동 등 괴산온마을배움터 관련 사업
- (내용) 괴산온마을배움터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마을학교축제, 괴산온마을배움터 관련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 (소요예산) 2,128,070원

7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



V

기대 효과

-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지방소멸지역인 괴산의 교육 현황, 문화적 배경, 주민들의 요구, 지역사회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괴산온마을배움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을 둔 법인(단체)을 선정하여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지역 체험처 등 지원으로 협력적 공교육 강화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안정적 재정 지원으로 사업의 지속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정기적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개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 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9.]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

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 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9.>

제12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30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7. 22.]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47호, 2022. 7.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民間에 위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 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제5조(계약의 체결 등)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22.>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 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7. 22.>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자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7. 22.>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7. 22.>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7. 22.>

제10조 삭제<개정 2022. 7. 22.>

제11조(사무편람)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2.](#)>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
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47호, 2022.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14.] [충청북도조례 제4908호, 2023. 4.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공공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학교스포츠클럽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소속 학교 학생의 학사관리
 2.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제4조(기본계획)

-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3.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교스포츠클럽등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지도자) 지원,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를 단체 및 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은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 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908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9.] [충청북도조례 제5164호, 2024. 8.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

-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64호, 2024.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마을 배움터지원센터로 본다.